

---

## II. 금융소득과 과세

---

### 1. 금융상품과 금융소득

#### 가.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특성에 따라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상이하다. 은행의 경우 투자자금 출금 시 원본(투자원금) 지급이 약속된 금융상품을 공급하며 이러한 상품을 수신상품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수신상품으로는 은행에서 흔히 접하는 예·적금 상품을 들 수 있다. 증권 등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원본 및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가능한 위험이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 투자 원본 이상의 손실 발생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파생상품 등이 있으며, 최대 손실액이 원본 전액손실에 그치는 경우는 증권(주식, 채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험업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상품을 제공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을 보험상품이라 한다. 보험상품은 순수하게 위험보장만을 목적으로 하여 보험만기 시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과 위험보장과 함께 여타 금융상품처럼 만기 시 보험상품으로부터 금전적 이익(보험차익)이 발생하는 저축성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2)</sup>

---

2)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 제4호 참조.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저축성보험,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보장성보험으로 분류함.

〈그림 II-1〉 금융상품의 분류



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분류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상품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의 수신상품과 같이 일정기간 금전대여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채권 등에 투자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 주식 등에 투자하여 지분투자에 대한 사업이익의 분배금을 수령한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때, 채권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채권가격의 상승,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이익을 얻게 된 경우 이를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보고 소득분류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 혹은 보험보장기간 만료 이후 수령하는 만기환급금액은 보험이익으로 분류한다.

## 2. 금융상품과 과세

### 가. 금융상품별 소득과 과세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원리는 크게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로 나눌 수 있다. 열거주의는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원칙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그 분류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위 8가지 소득으로 정의 혹은 분류되지 않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반면, 포괄주의는 소득의 형태를 불문하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경우 위 열거된 8가지 소득가운데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이들 소득을 연단위로 결산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여타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로 분류과세<sup>3)</sup>하는데, 이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의 형태 및 납세자의 담세능력이 다른 것으로 보아 여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소득의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며 따라서 과세행정에서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을 의미한다.<sup>4)</sup> 이자·배당소득은 해당 소득 발생시점에 14%의 단일 세율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세하게 된다. 이때,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총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세율 14%의 분리과세<sup>5)</sup>를 통한 원천징수로 납

3) 분류과세는 여타 소득과는 종류를 달리하는 과세로서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함.

4)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call/income\\_tax/2009/09\\_02\\_02.html](http://www.nts.go.kr/call/income_tax/2009/09_02_02.html)).

5) 분리과세는 일정수준을 넘지 않는 적은 소득에 대해 납세 및 과세의 편의성을 위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뜻함.

세 의무는 종결된다. 하지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총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 여타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 총소득에 따른 누진적 소득 세율(progressive tax rate)을 적용받게 된다.

주식 채권 등 증권매입 시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본이익의 경우 소득 형태를 고려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일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를 비과세한다. 개인의 채권매매 차익, 소액주주의 거래소 코스닥 시장 등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 파생상품 거래 차익 등은 비과세된다. 하지만, 대주주의 주식거래 차익,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외 장외주식거래 차익, 해외주식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파생상품의 경우 역시 정확한 소득이 분류되지 않아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예정이다.

## 참고 1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이자소득이란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소득을 의미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이익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계약기간 10년 미만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1999. 1. 1 이후 최초로 가입분부터 과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 상기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배당소득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소득을 의미함.
  -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2009. 2. 4 이후 받은 이익부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2007.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상기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자료: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 나. 금융상품별 과세제도<sup>6)</sup>

### 1) 수신상품

은행업에서 취급하는 예·적금 등 저축 상품을 보통 수신상품이라 칭한다. 예·적금은 고객이 금융기관에 금전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때는 최소 원금과 같거나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원금보다 많은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당국은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원금을 예금으로 운영하여 원금을 보존하고 이자를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정기예금(ELD: Equity Linked Deposit)의 경우 예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상품이지만, 원본손실이 없기 때문에 수신상품으로 분류한다. 주가연계예금(ELD)은 이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원본의 이자소득, 이자 투자분의 자본이득 혹은 손실분을 통합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 수신상품들은 이와 유사한 상품의 과세 방식을 차용하여 과세한다. 양도성예금증서, 어음 등은 채권에 대한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금(金)적립 상품, 금의 가치와 연동되는 예금 또는 대출 상품 등은 파생결합증권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 2) 채무증권

채무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sup>7)</sup> 소득세법에서는 ‘채권 등’의 넓은 개념으로 채무증권을 포괄하고 있다.

6) 금융상품별 과세제도는 손영철·서종균(2014)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타 연구들을 참조하여 정리함.

7)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채권으로부터 약속된 금리(표면금리)에 의한 이자소득과 시장금리변동으로 인한 채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시장의 채권이자율이 변동하여 채권가격이 바뀔 때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를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연 표면금리 5%의 채권가액 1억 원짜리 채권을 1년간 보유할 경우 이자 소득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로 과세하나, 같은 등급의 시장채권금리가 4%로 하락하였을 경우 5%의 이율을 약속한 채권의 가격은 1억 2,500만 원이 되어 해당 채권 소유자는 2,500만 원의 자본이득을 얻게 되나, 이를 양도하여 얻게 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sup>8)</sup>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국내에서 발행한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하고 있다. 해외 발행 채권의 경우, 표면이율에 따른 이자,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에 의한 자본이득, 그리고 환율변화에 따른 환차익이 존재하는데, 이자의 경우 이자소득세로 과세하고 가격변동으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하지만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RP, Repurchase Agreement)의 경우 매매차익 역시 이자소득세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그 이유는, 환매조건부 채권의 경우 매매거래의 형태는 유가증권거래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증권을 발행자가 다시 사간다(Repurchase)는 점에서 그 실질은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나, 3년 이상 보유한 장기 채권의 경우 3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장기 채권은 만기가 10년 이상인 국내외 채권을 의미한다.

### 3) 지분증권

지분증권이란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자본시장법은 지분증권을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

8) 이는 시장금리와 채권가격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직관적으로 설명한 예이며, 만기 및 보유 기간에 따라 가격은 다를 수 있음.

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의 출자 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up>9)</sup>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등’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정의 및 설명하고 있다.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지분참여의 대가로 얻게 되는 배당과, 기업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매매차익(자본이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주식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주식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경우 비과세한다. 하지만 대주주의 주식거래, 비상장 주식거래, 장외시장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의 판단 기준의 경우 2015년까지는 유가증권시장(KOSPI)의 경우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이 1% 이상 혹은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보유주식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되어 주식거래 양도차익 과세를 위한 대주주 판단 요건이 강화되었다.

또한 주식거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2015년까지는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10%를 부과하고,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으로 1년 미만 보유 시 30%, 1년 이상 보유 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대주주 역시 주식 양도 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9) 자본시장법 제4조.



〈표 II-1〉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구분		과세여부		적용세율
		과세	비과세	
상장 법인주식	유가증권시장거래주식	대주주	소액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20%</li> <li>•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으로 1년 미만 보유 30%</li> <li>• 그 이외 20%</li> </ul>
	장외거래주식	모든 주주	-	
비상장법인주식		모든 주주	-	

자료: 손영철 외(2014) 자료를 2015년 세법개정에 맞추어 재구성.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는 대신 증권의 거래에 따르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다.<sup>10)</sup> 증권거래세율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0.5%, 코스닥시장의 경우 0.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거래소 상장주식의 경우 0.15%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하여 투자자의 실질 세 부담은 코스닥과 동일한 거래액의 0.3%가 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증권거래세의 납세 주체는 주권을 매도(양도)한 자가 된다.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역시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0%, 그 이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 4) 파생상품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은 원본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스왑 계약을 의미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하거나, 권리를 부여하거나 혹은

10)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는 1956년 개소하였고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과세되었다가 1971년 자본시장육성을 위해 폐지되었음. 하지만 1978년 8월 이후 연말까지 건설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1/3토막이 났던 건설주파동을 계기로 단기적 투기를 막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1979년 재도입됨(<http://shindonga.donga.com/3/all/13/102434/1> 참조).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1)</sup>

초기 파생상품은 기초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적은 자금으로 고수익을 누리기 위한 투자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어떠한 소득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파생상품 투자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장내 파생상품 투자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5)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한다.<sup>12)</sup>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변화와 같은 외생적인 지표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데, 기초자산의 위험정도와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이자율연계증권, 추가연계증권, 통화연계증권, 신용연계증권, 실물연계증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금융회사들은 크게 추가연계증권(ELS), 추가워런트증권(ELW) 그리고 파생상품연계증권(DLS)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추가연계증권(ELS)은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추가 지수 등에 연동하여 만기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증권회사가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추가연계증권은 추가연계예금(ELD)과 마찬가지로 운용자산의 상당부분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원금의 일부 혹은 채권투자로부터의 이자를 추가선물 혹은 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데, ELD와의 차이점은 포트폴리오의 차이 등으로 인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예금자 보호 역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파생상품연계증권(DLS)은 앞서 언급한 파생상품 중 추가연계증권(ELS)을 제외한 이자율연계증권, 통화연계증권, 상품연계증권 등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11) 자본시장법 제5조.

12) 재정경제부(20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주가워런트증권(ELW)은 매수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래의 만기일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주권을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주가워런트증권(ELW)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하나 해당 증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사거나 팔 권리라는 측면에서 옵션과 구조와 성질이 유사하여 실질은 선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주가워런트증권의 매매차익이나 권리행사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한다.

추가연계증권(ELS), 파생상품연계증권(DLS)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주가워런트증권(ELW)은 비과세한다.

## 6) 집합투자기구(펀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sup>13)</sup> 집합투자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이라는 점과,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운용에 대한 운용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합투자기구는 계약형태에 따라 신탁형, 회사형 그리고 조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신탁형(Trust)의 경우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자산을 신탁하는 형태이고, 회사형(Company)은 고객이 금융회사가 설립한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의 주주로 참여하는 형태로 투자회사의 형태로는,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가 있다. 조합형(Partnership)은 고객과 금융회사가 투자를 위한 조합을 형성하여 투자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형태로 투자조합과 투자익명조합 형태가 있다. 다양한 계약형태와 투자기구 형태가 존재하나 세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13)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표 II-2〉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투자기구분류	계약형태	투자기구형태
집합투자기구	신탁형	투자신탁
		투자회사
	회사형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조합형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상품 형태에 따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투자를 통한 소득은 채권의 이자소득 및 매매차익, 주식의 배당금과 주식의 매매차익, 해외주식의 배당금과 매매차익,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차익, 해외채권 및 주식 매매 관련 환차익 등으로 구성된다. 집합투자기구(펀드)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각각의 투자 상품별로 분류할 수 없는 불투명체로 보아 펀드의 전체손익을 통산하여 전체 투자기구의 손익에 따라 과세한다. 단, 개별 상품 투자 시 비과세되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제외되며 과세대상 액수 계산 시 투자수익에서 각종 보수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 7) 상장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 Fund)

상장집합투자기구(ETF)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으로서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해 운용하는 구조화된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칭한다.<sup>14)</sup> 따라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으로서의 특징과 기초자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수펀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ETF의 구성이 가능하다.

14) 자본시장법 제234조 제1항.

개인이 ETF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는 분배금과 ETF 증권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자본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배금이란 투자된 금융상품에서 이자·배당 등이 발생할 경우 ETF의 가치와 지수 간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지수를 초과하는 가치 분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여 지수와 가치를 일치시킬 때 발생하는 금액을 분배금이라 한다. 분배금은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고, ETF 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역시 배당소득세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단, 주식의 가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경우 주식매매차익 비과세와의 형평성에 따라 ETF 매매차익 역시 비과세한다.

## 8) 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이란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를 칭하는데, 투자자가 투자의 방향을 위탁 금융회사에 지정하면 금융기관은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 후 수익자에게 실적을 배당한다. 집합투자기구(펀드)는 특정 투자형태를 정하고 투자자가 가입하나, 특정금전신탁은 고객과 금융회사가 개별적 계약을 맺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개인이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명체로 보아 소득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한다.

## 9) 보험

보험은 공동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대수의 법칙에 의한 공동비축금을 마련하여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기술적 제도<sup>15)</sup>로서,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3자 또는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계약<sup>16)</sup>을 지칭한다. 보험계약의 주체로는 보험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혹은 보험의 목적물, 보험을 수령하게 되는 보험수익자 그리고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자(보험회사)가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의 관

15) 양승규(2005), 『보험법 제5판』, 삼지원, p. 53.

16) 보험경영연구회(2010), 『보험과 리스크 관리』, 문영사, p. 70.

계에 따라 보험금에 대한 과세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

세법상 보험은 크게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을 의미한다. 반면, 보장성보험이란 만기 또는 중도해지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납입 보험료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sup>17)</sup> 이는 기본적으로 보장성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입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수준의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로 과세하는데,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자산의 멸실·손실로 인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보험계약에 따라 초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불입액이 2억 이하인 경우 또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매월 적립식으로 5년 이상 납입한 저축성보험 및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차익 역시 비과세하고 있다.<sup>18)</sup>

17)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반대해석.

18)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